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개편주거급여 알기

김선미(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센터장 / masoyama@empal.com)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

1) 제도 성립 배경

- 1997년 IMF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여 기존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여기에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됨.

2) 연혁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 '99. 6. 21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 '00. 10. 1일부터 시행
-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조기완료(행정자치부, 2000. 9월까지 복지행정시스템 보급)/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Work- Net, 공적연금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행자부, 2000년 10월부터 개통), 2010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행복e음 가동 2013년 완료¹⁾.

- 자활지원사업의 시행 기반 확충 : 자활공동체 지원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확대 지정('99년 20개소 → 2000년 70개소 → 2001년 169개소 → 2002년 175개소 → 2013년 7개 광역자활센터와 248개 지역자활센터 편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의 확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소득·재산조사, 수급자 선정·관리, 체계적인 자활지원

3) 의의

-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대량실업과 빈곤의 확산, 새로운 형태의 빈곤 출현 등은 우리 사회에 과거와 다른 빈곤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했고, 여기에 낙후한 <생활보호법> 등 공공부조 개혁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으로 활동이 수반되면서 새로운 법제정이 추진되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으로 결과 되었음.
- 기초법은 종전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①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의 표현으로 권리성을 강화했고²⁾, ② 인구학적 기준 삭제 등 수급권자의 범위확대, ③ 선정기준의 합리화, 절차적 정당성을 꾀했으며, ④ 급여수준의 향상³⁾과 주거급여항목 추가하는 등 급여종류의 다양화를 도모했고, ⑤ 자활계획의 수립을 추가했음. 이로서 기초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음.

1)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2010년 1월부터 가동된 정부 전산망이다. 사통망(행복e음)에는 과거 국세청·국토해양부·노동부·건강보험공단 등 37개 정부기관으로부터 442개 공적자료를 받아 소득, 재산, 중복수혜방지를 위한 복지사업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내용은 개인별·가구별로 종합해 담겨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특정하지 않아도 이 법에 의해 수급권이 보장되어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이 포괄하는 제도는 제3조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3)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생활보호제도 하에서의 보호 수준보다 크게 향상되었으나 중위소득 40%내외로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표 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구분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적 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 <u>권리적 성격</u> : <u>수급권자, 보장기관, 급여 등</u>
대상자 구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구분 : <u>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u> : <u>자활보호자 - 위 대상 제외로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u>	- 연령별 대상자 구분은 폐지, <u>다만 근로능력에 의한 구분은 있음.</u>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함.
대상자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 : 99년에 월소득 23만원(개인), 월재산 2900만원(가구) - 보호대상자와 부양가구의 가구원 1인 소득, 가구당 재산액이 생활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 <u>소득인정액(재산의소득환산액+가구소득 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u> :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가구원수)별 계측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 - <u>부양의무자기준에 부합할 경우</u> : 제도 시행 초기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 <u>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2015년 사망한 1촌 배우자 제외</u>
급여 종류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는 전체지원, 자활보호는 의료비의 80%만 지원 - 교육보호 : 중고생자녀학비 전액지원 - 해산보호 - 장제보호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다만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하여 지급 - <u>주거급여(신설) :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지급</u> - 의료급여 : 근로능력에 따라 1,2종 구분 -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 - 긴급급여신설 : 긴급필요시 우선 급여 실시.
자활 지원 계획	- 없음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조건 계획 : 수급자의 궁극적 자활촉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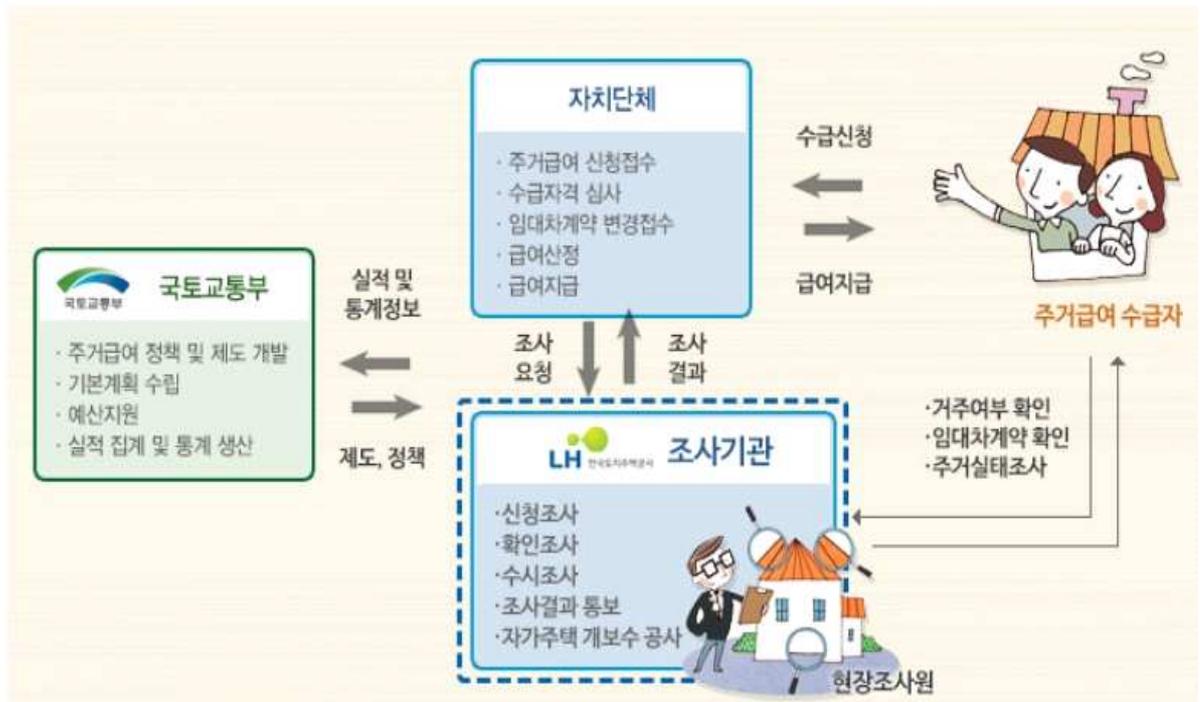
2. 수급신청절차

<그림 1>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 주택조사 절차는?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 주택조사 내용은?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빈곤층 지원제도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2층 구조로 되어있음.

<그림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제도	시행시기
1차 안전망	[사회보험] - 본인 기여금 분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1999년 건강보험 365일급여 확대 2002년 고용보험 1인사업장 확대 2000년 산재보험 1인사업장 확대 2000년 장기요양보험도입 2008년
2차 안전망	[공공부조] - 본인 기여금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보장제도 시행 2000년 의료급여제도 차상위 확대 200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2005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2007(2014년 기초연금)

<표 2> 사회보장방식과 보장영역별 제도

영역 방식	소득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의료보장	자활지원 (고용지원)
보험료방식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자산조사방식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장애연금 저소득장애수당 긴급복지지원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융자 등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공공근로 자활사업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 보육료지원
데모그란트방식 (사회수당)			무상교육	보건소 예방접종 등	

2) 짧은 역사를 가진 사회보험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상황에 놓인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로 역할 해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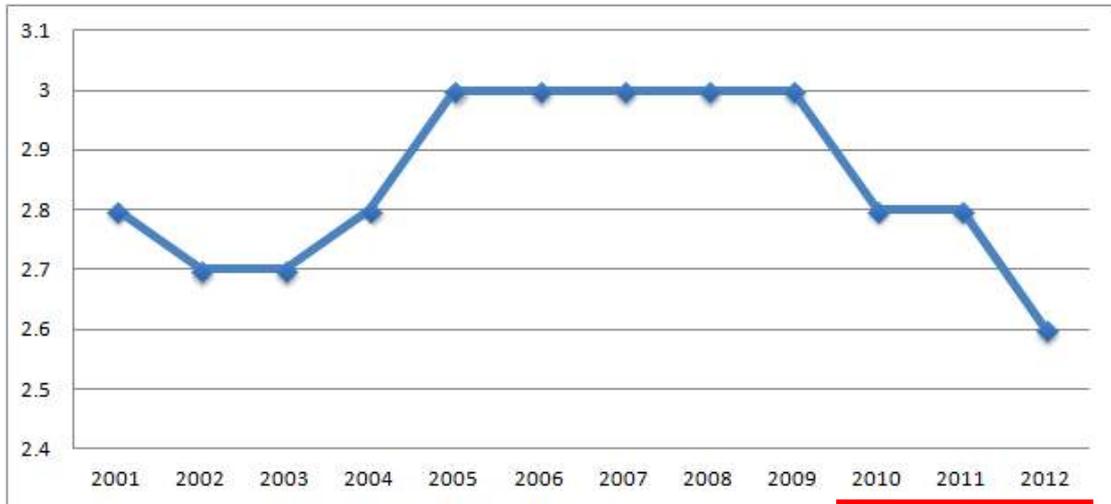
- 기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현황

1) 수급자수 추이 및 기초보장제도 예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제도 시행 이후 10여 년 동안 3%안팎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최근 3%이하로 감소.
-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 11.4%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00년 148만 명에서 2013년 상반기 138만 명으로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었으며, 2014년 3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 국민의 2.6% 수준인 134만 8513명으로 크게 감소했음.

<그림 3>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표 3> 기초생활보장예산 및 수급자 수 추이 (2002~2013)

연도	예산액	예산상 인원	실제수급자수				
			전인구 대비(%)	합계	일반수급	조건부과수급	특례수급
2001년	1,598,539	1,550,000	3.0	1,345,526	-	-	-
2002년	1,563,124	1,550,000	2.8	1,275,625	1,238,922	36,703	-
2003년	1,586,299	1,500,000	2.9	1,292,690	1,256,361	36,329	-
2004년	1,791,324	1,550,000	3.0	1,337,714	1,299,052	38,662	-
2005년	2,148,094	1,495,400	3.1	1,425,684	1,384,155	41,529	-
2006년	2,410,452	1,616,000	3.2	1,449,832	1,334,731	115,101	-
2007년	2,647,355	1,674,000	3.2	1,463,140	1,338,224	113,711	11,205
2008년	2,941,686	1,596,352	3.2	1,530,000	1,302,625	122,120	19,265

2009년	3,224,800	1,632,298	3.2	1,569,000	1,338,091	133,219	20,008
2010년	3,195,600	1,632,000	3.1	1,549,820	1,458,198(시설수급자 91,622)		
2011년	3,189,600	1,605,000	2.9	1,469,000			
2012년	3,126,400	1,570,000	2.7	1,394,000	1,394,042(시설수급자 93,543)		
2013년	3,404,973		2.6	1,350,891	1,258,582(시설수급자 92,309)		

<표 4> 2014년 기초생활보장예산(안) 주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A)	'14예산 (안)(B)	증 감 (B-A)	증가율 (%)	주 요 내 용
총 계	8,553,165 (8,768,934)	8,816,896	263,731	3.1	
기초생활급여	3,404,973 (3,432,975)	3,486,717	81,744	2.4	최저생계비 5.5% 인상/(4/4분기)부양 의무자기준인상으로 12만명 증가
1. 생계급여	2,590,188 (2,609,090)	2,523,954	△66,234	△2.6 (△3.3)	○ 지원대상 : 128만 명, 77만 가구→ (상)123만 명, 74만 가구(하) 133만 명, 80만 가구 - 시설수급자 : 89→94천명
2. 주거급여	569,185	728,487	159,302	28.0	○ 지원대상 : 115만 명, 73만 가구 →(상)108만 명, 70만 가구, (하) 152만 명, 94만 가구 ○ 주요변수 - 주거급여 자격기준선: 중위소득 43% - 평균 급여액 8만원→11만원
3. 교육급여	129,481	111,053	△18,428	△14.2	○ 지원대상 : 26만 명 → 21만 명
4. 해산·장제급여	21,985	21,244	△741	△3.4	○ 지원대상 - 해산급여 : 3,914→(상)3,369, (하)3,597명 - 장제급여 : 34,239→(상)32,219, (하)34,399구
6. 양곡할인	92,344	100,109	7,765	8.4	
7. 기초생활보장관리	465	700	235	50.5	
8. 복지급여사후관리	1,325	1,170	155	△11.6	
의료급여	4,248,347 (4,393,947)	4,437,054	188,707	4.4	
1. 의료급여관리	500	500	-	-	
2. 의료급여경상보조	4,247,847 (4,393,447)	4,436,554	188,707	4.4	○ 기본진료비: 3,944,806→4,093,912 백만원 - 1,571천명(기초 1,448천명, 타법 1 22천명)
긴급복지	62,453 (97,120)	49,938	△12,515	△20.0	
자활지원	587,056	541,821	△45,235	△7.7	
재산담보부 생계비 용자	2,146	1,402	△744	△34.7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비수급빈곤층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255,690	299,964	44,274	17.3	장애인의료비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 료비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0월.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11.14 발표자료에서 인용함.

2)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현황

- 가구유형별 분포 : 일반가구(부모+자녀)를 제외하면(2010년 이후 지속적 하락세)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비중 높음. 한부모가구 중 여성한부모가구 많음.
- 가구원수별 분포 : 1인가구의 비중이 66%정도이며 2인가구가 18.0%로 1,2인가구가 전체가구 중 85%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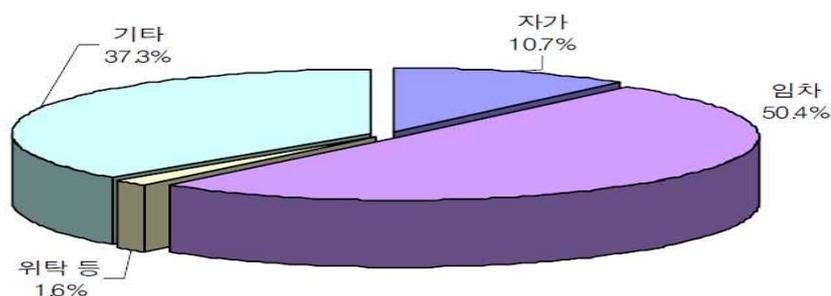
<표 5>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가구유형별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717,861	753,681	809,745	831,692	852,420	854,205	882,925	878,799	850,689	821,879	810,544
노인가구 (29.0%)	238,790	240,030	244,565	242,470	245,935	243,132	244,529	243,708	237,213	236,617	235,601
소년소녀 가장(0.8%)	13,932	14,387	14,823	14,713	14,475	14,276	13,533	11,565	9,798	8,105	6,945
모자가구 (9.4%)	66,636	70,951	77,985	81,189	82,920	82,880	86,961	85,970	83,525	78,333	76,270
부자가구 (2.3%)	17,158	17,916	19,450	19,963	19,934	19,744	21,115	20,879	20,479	18,820	18,366
장애인가구 (21.7%)	112,987	123,418	136,892	144,747	154,066	162,527	171,330	173,322	173,751	174,112	175,867
일반가구 (31.0%)	230,827	249,393	276,227	288,945	294,872	291,680	302,202	291,774	277,081	259,866	251,372
기 타 (5.7%)	37,531	37,586	39,803	39,665	40,218	39,966	43,255	51,581	48,842	46,026	46,123

<표 6> 2012년, 2013년 가구원수별 현황

구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2012년	가구수	821,879	540,924	147,736	80,900	34,494	11,272	3,168
	구성비	100	65.8	18.0	9.8	4.4	1.4	0.2
2013년	가구수	810,544	543,295	143,392	75,510	33,549	10,406	3,027
	구성비	100.0	67.0	17.7	9.3	4.1	1.3	0.2

<그림 4> 수급가구 주거유형별 현황



※ 기타 : 부분 무료임차(21.6%), 전체 무료임차(7.9%), 움막비닐하우스(0.4%), 무허가주택(0.8%) 등

5. 급여종류 및 급여방식과 급여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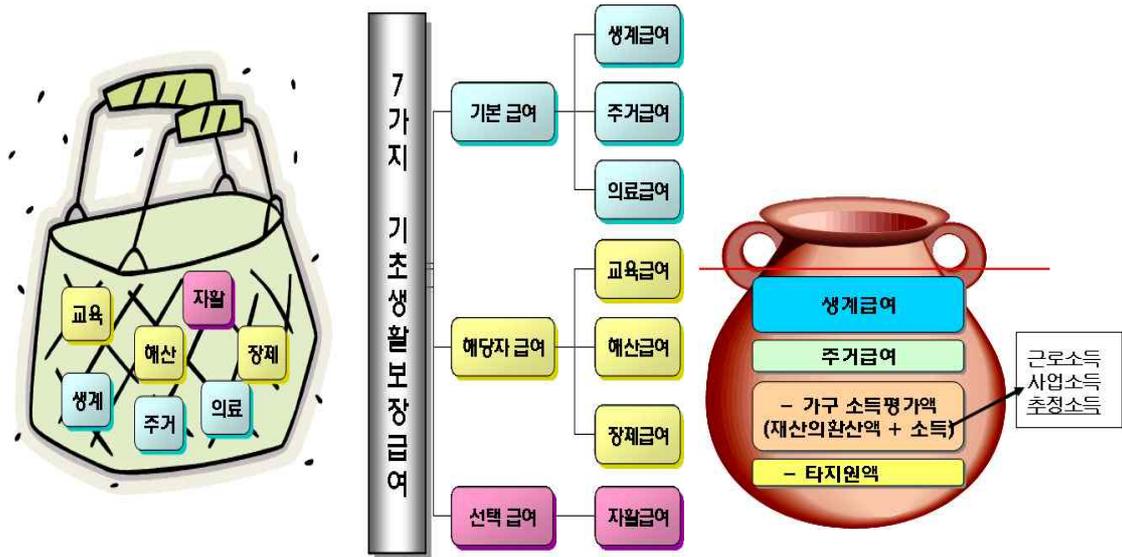
1) 급여종류, 지급방식 및 지급원칙

(1) 급여지급 방식 : 통합급여(all or nothing) → 수급가구가 되면 모든 급여를 받게 됨. 선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됨.

⇒ 수급자격을 잃게 되면 거의 모든 급여가 상실됨(통합급여). 따라서 수급자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임. 또한 현금급여선을 상한으로 소득평가액을 따져 급여가 지급되므로(보충급여) 일을 기피하는 등의 태도가 나타나게 됨. 이렇게 제도 설계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현상을 개인의 도덕적 해이나 빈곤의 덫(자발적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오류임.

(2) 급여지급 원칙4) :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 가족부양 우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있음.

<그림 5>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구성



4) (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후략)

<표 7> 2014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25,920
-타지원액	115,340	196,391	254,060	311,731	369,402	427,071	484,742
현금급여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주거급여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398,157	451,923
생계급여	380,531	647,932	838,198	1,028,463	1,218,729	1,408,995	1,599,260

※ 왜 최저생계비보다 실제로 지원되는 급여(현금급여)는 낮을까?

☞ 최저생계비가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타지원액과 가구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분을 빼고난 후 현금급여액을 산정한다.

▪ 현금급여액(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 타지원액(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주민세, 전화세 등) - 가구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 4인가구 기준 2010년 타법지원액(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 : 식료품비(급식비 62,510원)+광열수도비(전기 6,346원)+의료비(보건의료서비스 32,138원)+교육비(65,930원)+가구집기가사용품(쓰레기봉투 1,220원)+교양오락비(TV수신료 2,500원)+교통통신비(유선전화 1,200원+이동전화 18,040원)+비소비지출(국민연금 38,610원+건강보험 24,390원+주민세 433원) = 타법지원액 합계 : 4인가구 기준 타법지원액을 253,317원으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원수별 타지원액을 감액

(2010년도 계측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 재산의소득환산액(자동차, 집, 저축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모두 수급가구의 소득으로 '인정'해 차감한다.

6. 수급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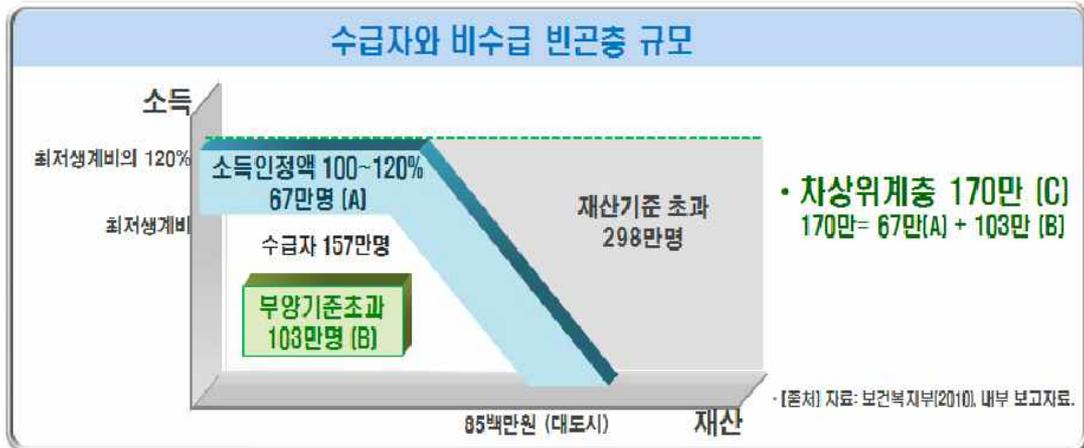
■ 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 + “**부양의무자기준**”(없거나 미약)

- 기초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5년 7월 삭제)
- "**부양의무자**"란 (제2조 5항)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2015년 신설)

1) 부양의무자기준 :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운상

-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2010),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제도에 포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만명(60가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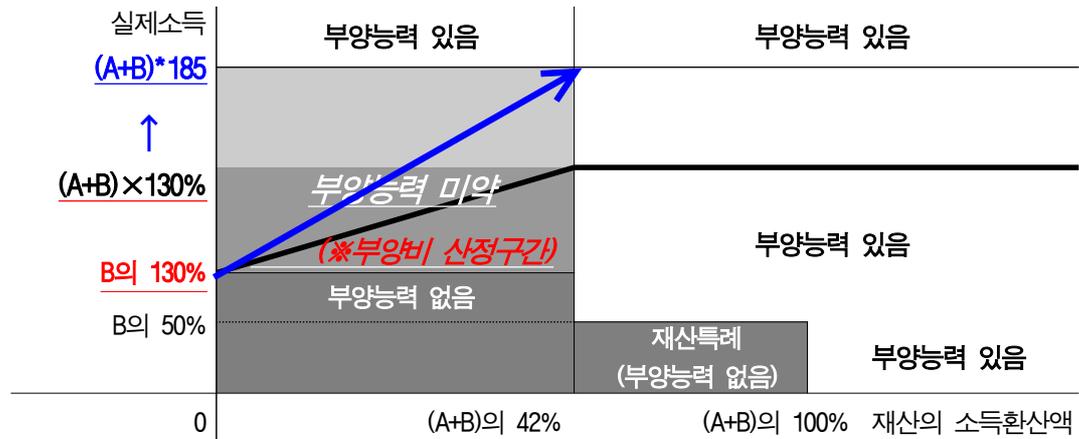
<그림 6> 비수급빈곤층의 규모



- (정 의)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
 - (A)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120%는 67만명
 - (B)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103만명
 - (C) 차상위 계층 170만명 [67만(A)+103만(B)]
 - ※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기준 초과자: 240만명

자료: 빈곤정책제도개선방안 연구(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그림 7>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 구간변경 포함



※ A: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 (A+B)×130% → (A+B)×185%로의 변경⁵⁾은 수급권자가구가 장애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일 경우에만 한정됨. 이는 **현행 간주부양비산정 구간의 확장만 도모했을 뿐임**. ① 부양능력있음의 구간에 있지만,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국가선보호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하며(※대법원 대구달서구청 상고기각판례 있음), ② ‘부양능력없음’ 구간의 상향이동이 있어야 함. 게다가 변경된 규칙의 시행에 있어서도, 한부모, 노인, 장애가구만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보장의 효과-사각지대 포괄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근본적으로 빈곤계층의 부양을 사적부문에 전가하는 부양의무자기준 문제가 있는 것임.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이 있음⁶⁾

5)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란 명목으로 시작한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는, 해당내용의 변경시행을 앞두고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행되었다. 결과 확인대상자(?) 38만명 중 3만3천명에 대한 보장이 중지되었고, 14만명은 급여가 삭감되었다. 급여중지 직후 수급자 사망사건 등 후폭풍이 거세자 ‘소명절차’를 당해 9월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8월 중순 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4만3천명이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하나, 9월말까지의 통계수치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2012년말 현재 여전히 수급탈락 혹은 삭감가구에 대한 통계수치와 사후 사례관리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6) 미국, 영국, 프랑스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없다.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족의 부양능력을 강조하고, 외국인의 경우 후원자(혹은 보증인)의 경제능력과 경제적 상황변화를 고려한다. 독일의 경우는 민법 제1601조에 근거하여 직계자녀와 부모 간에 상호부양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사위나 며느리, 손 자녀 등은 시부모, 장인과 장모,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갖지 않는다. 누군가 사회부조수급에 대한 욕구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경우 사회부조 전달 주체는 일단 급여를 지급한 후 부양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때, 앞서 언급한 직계자녀 외에 다른 가족성원은 부양의무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부양의무를 갖지 않는 가족성원의 소득이나 자산은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계산에는 적용된다. 스웨덴의 경우 철저한 핵가족 부양원칙을 갖는다. 즉, 부부와 18세 미만의 아동만 포함하여, 부부는 공식적 혼인관계 및 사실한 관계의 동거인(동성 포함)을 의미한다(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2) 소득인정액 : 소득으로 간주하는 모든 액수가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수급가구로 선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표 8>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

기본 공제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권)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근로무능력가구	8500만원	6500만원	6000만원
금융재산은 ① 500만원-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② 3년 이상 장기 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 500만원 한도 1500만원 공제 (정기예금, 적 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상품 적용)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4.17%	6.26%	100%

○ 2013년 변경사항

- **취약계층수급자 근로소득공제비율 확대** :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학생등 취약계층 수급자 근로활동을 인정, ① 65세이상노인과 장애인은 소득의 30%를 공제, ② 대학생은 3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공제, ③ 18세미만의 경우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공제함.
- **이행급여특례**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해 취창업함으로써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이 증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에 대해 2년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유지함.
- **주거용 재산기준 변경** :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일정금액을 한도로 주거용재산으로 환산율(1.04%) 적용, 나머지재산에 대해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주거용재산환산율 1.04%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천8백만원	3천8백만원

예) 서울시 00구에서 사는 4인가구가 수급권자(근로능력가구)가 1억1천만원에 전세로 거주한다면 수급가구가 될까? 된다면 얼마나 받게 될까?

① 주거용재산한도액 초과분 1천만원을 일반재산비로 계산 :

1천만원*4.17%=417,000원

② 거주목적의 재산인 1억원(대도시 한도액)중 대도시 기본재산공제액(5천4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주거용재산비율로 계산 : 4천6백만원*1.04%=644,000원

③ 이 가구의 월소득은 417,000+644,000=1,061,000원의 월 소득이 있다고 보게 됨.

④ 계산된 소득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만원 이하이므로 수급가구가 됨. 다만 실제로 받는 급여액은(추정소득부과분이나 간주부양비 등은 고려하지 않았음) 현금급여에서 계산된 소득을 뺀 나머지 부분인, 60만원 정도를 수급비로 받게 됨.

⑤ 변경된 제도에서는 어떤 급여를 받게 될까?

- 자동차가 공동명의일 경우 : 소유지분 적용 않고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산정(장애인무관)

-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변경 : 재산기준이 상향조정되고(대도시 2억8천, 중소도시 1억3천6백, 농어촌 1억150만원) 소득환산율 또한 주거용재산은 1.04%, 나머지 재산은 4.17%로 공통 적용함.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기초법 제1조)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 공표하며(기초법 제6조), 이는 다음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각종 복지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 각종 복지서비스의 대상판별의 기준선으로 활용됨.

- 최저생계비는 그 수준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음. 현행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최저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선정 및 내구년수와 가격책정에서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표준가구선정이 수급가구의 현실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음. 더군다나 1999년 최저생계비가 측정된 이후 상대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수준균형방식, 혹은 상대빈곤선 도입의 주장이 있었음.

<표 9>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복지사업 (2012년 11월말 기준)

선정기준	기준선	사업현황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00%	기초생활(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장애·해산급여), 의료급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주거현물급여집수리 등
	최저생계비 120%	여행바우처, 문화바우처, 가스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저생계비 130%	장애인자녀교육비, 한부모가족교육비, 한부모가족양육비, 이동통신요금감면, 차상위계층양곡할인 등
	최저생계비 150%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청소년특별지원(생활, 의료) 등
	최저생계비 180%	청소년특별지원(학업, 자립, 상담) 등
	최저생계비 250%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소득	최저생계비 100%	긴급생계지원(재산 별도 산정)
	최저생계비 150%	긴급지원(교육, 해산비, 장제비, 주거 등),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저소득한부모복지자금대여 등
	최저생계비 200%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장애인자영업창업융자 등
	최저생계비 300%	소아암환자지원(재산별도 산정)
보수월액 (건강보험)	최저생계비 120%	저소득층 자녀 PC 및 인터넷통신비지원 등
	최저생계비 130%	저소득층무료급식비지원 등
	최저생계비 150%	취업성공패키지 등
	최저생계비 200%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임신부영유아영양플러스 등
	최저생계비 300%	입원명령결핵환자의료비지원 등

- 매해 9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인상은 해마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았으며, 무엇보다 최저생계비를 계측(계산)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음.

※ 최저생계비 계측과정 : 11개비목(식료품,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세금) 등의 비목)을 설정 → 비목별생활필수품⁷⁾ 선정(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 **하위 40%이하?!**) → **표준가구선정(4인 가구. 부모 40대, 자1세, 9세, 중소도시에 전세로 거주)** → 표준가구의 1개월 소비내역을 조사하여 세부품목별 지출비용을 합함 → 비목별 소비지출액 도출하여 합산, 4인가구 최저생계비산출 → 가구균등화지수 적용하여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산출

7)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 결정

- 1999년 최저생계비가 측정된 이후 상대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이에 수준균형방식 혹은 상대빈곤선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표 10> 최저생계비 비교지표 (단위 : %)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최저생계비상승률		-	3.0	3.0	3.5	3.0	3.5	7.2	3.0	3.0	5.0	4.8	2.8	5.6	3.9
소비자물가상승률		0.8	2.3	4.1	2.8	3.5	3.6	2.8	2.2	2.5	4.7	5.4	3.0	4.0	-
체감물가상승률		2.4	3.7	5.1	2.5	4.0	4.9	4.1	3.1	3.1	2.8	2.1	3.4	4.4	-
최저생계비대비현금급여율		=							85.5	85.5	83.7	83.3	83.7	81.9	81.9
근로 가구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40.7	38.4	36.4	35.4	33.7	31.8	33.4	32.6	31.2	30.9	32.8	↓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45.5	43.6	41.6	40.2	38.5	36.4	37.3	36.2	35.0	34.8	36.8	↓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48.1	44.6	42.6	42.7	40.5	38.5	40.2	38.9	38.1	37.3	39.2	↓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57.8	53.4	50.4	50.0	46.3	44.8	46.5	45.3	44.1	42.4	45.7	↓		
전 가 구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	-	-	-	36.0	34.4	35.9	34.8	33.8	33.5	34.5	↓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	-	-	-	40.7	38.8	39.6	39.0	37.7	37.8	38.3	↓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	-	-	-	42.1	40.1	41.5	39.8	39.2	39.7	40.8	↓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	-	-	-	48.4	46.6	48.3	47.2	47.0	46.2	47.9	↓		

<표 11> 최저생계비 인상률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3.0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3.0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3.5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3.0	
2004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7.15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3.0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3.0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5.0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4.8	
2010년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2.75
	현금급여선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2011년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5.6
	현금급여선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3.2

한다.

2012년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3.9
	현금급여선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3.9
2013년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3.4
	현금급여선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3.4
2014년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5.5
	현금급여선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4.2
2015년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88,329	1,976,970	2.3
	현금급여선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2.3

- 최저생계비 계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과학적인지, 객관성을 확보했는지), 현실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그리고 활용이 적합한 것인지(최저생계비가 빈곤선으로 활용되어 공공부조의 급여선이 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해 개별급여선으로서의 논란, 즉 욕구별 급여가 적절히 수행되는 것인지가 쟁점사항이 됨.

<표 12> 최저 피복·신발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 품목	지역	계절/ 규격	내구 연수	단가 (원)	수량	중소도 시(원)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피복 및 신발 외의						57,649			
가장(40세)									
신사복	도시	동	12년	90,000	2벌	1,25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도시	춘추	12년	80,000	2벌	1,111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오버코트	전국	동	10년	80,000	1점	667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잠바	전국	동	10년	30,000	2점	50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10년	20,000	2점	333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바지	전국	동	6년	20,000	2점	556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6년	15,000	2점	417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반바지	전국	하	6년	10,000	2점	278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운동복	전국	동,잠옷겸용	6년	20,000	2벌	556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잠옷겸용	6년	15,000	2벌	417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주부(37세)									
숙녀복	도시	동	12년	90,000	2벌	1,25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도시	춘추	12년	70,000	2벌	972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오버코트	전국	동	10년	80,000	1점	667	보유율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잠바	전국	춘추, 동	10년	30,000	2점	50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스커트	전국	춘추, 동	10년	30,000	2점	50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바지	전국	동	9년	20,000	3점	556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9년	15,000	3점	417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반바지	전국	하	6년	10,000	2점	278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운동복	전국	동,잠옷겸용	10년	20,000	2벌	333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잠옷겸용	10년	15,000	2벌	250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남, 11세)									
잠바	전국	동	2년	30,000	1점	1,25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2년	20,000	1점	833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바지	전국	동	2년	15,000	2점	1,25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2년	10,000	2점	833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반바지	전국		2년	8,000	2점	667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체육복	전국	동	3년	18,000	1벌	50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하	3년	15,000	1벌	417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여, 9세)									
잠바	전국	동	2년	30,000	1점	1,25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2년	20,000	1점	833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바지	전국	동	2년	15,000	3점	1,875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전국	춘추	2년	15,000	3점	1,875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남)									
동내의	전국		6년	8,800	3점	367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런닝	전국		3년	2,200	9점	55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팬티	전국		3년	1,900	9점	475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자녀(여)									
동내의	전국		6년	8,800	3점	367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런닝	전국		3년	2,200	9점	550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팬티	전국		3년	1,900	9점	475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직물, 실									
실	전국		6년	1,000	2타래	28	탄력성	시장가격조사	07년 同

<표 13>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 품목	지역	계절/ 규격	내구 연수	단가 (원)	수량	중소도 시(원)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교육비						65,930			
<초등학생-11세(남)/9세(여)>									
교재비									
참고서	전국	1,2학기 전과, 각 1인당 1권	1년	23,408	4권	7,803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문제집	전국	1,2학기 각 1인당 1권	1년	12,320	4권	8,213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보충교육비									
가정 학습지	전국	교과목 관련 (1종*6월/인)	1년	22,000	12월	32,000	통 계 청 2009 사교 육비조사	통계청 2009 사교육비조사	실태조사
수련회	전국	국내 2박3일 기준(1회/인)	1년	45,000	1회	7,500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기타 교육비	전국	아외학습 및 특별활동	1년	10,000	2회	1,667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문방구비									
연필	전국	HB보통나무 (1타스/인)	6월	2,265	2타스	755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싸인펜	전국	수성(2개/인)	1월	200	4개	800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색연필	전국	12색 (1세트/인)	1년	2,500	2세트	417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공책	전국	초등학생용 (9권/인)	6월	548	18권	1,644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스케치북	전국	초등학생용 (2권/인)	1년	1,206	4권	402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인쇄용지	전국	A4/250매	6월	2,665	1권	444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크레파스	전국	24색 (1세트/인)	1년	3,668	2세트	611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그림물감	전국	12색 1세트	1년	2,851	1세트	238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실태조사
붓	전국	수채화용 세트	2년	4,500	1세트	188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지우개	전국	소(2개/인)	6월	300	4개	200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칼	전국	소형 커터	2년	300	1개	13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가위	전국	중	2년	700	1개	29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풀	전국	중간크기 (1개/인)	6월	500	2개	167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색종이	전국	양면(10개/인)	6월	500	20개	1,667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필통	전국	초등학생용 (1개/인)	1년	1,500	2개	250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교육용 악기	전국	초등학생용 리코더	3년	2,000	1개	56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자	전국	초등학생용 20cm(1개/인)	1년	200	2개	33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앨범	전국	중품(30매)	3년	15,000	2개	833	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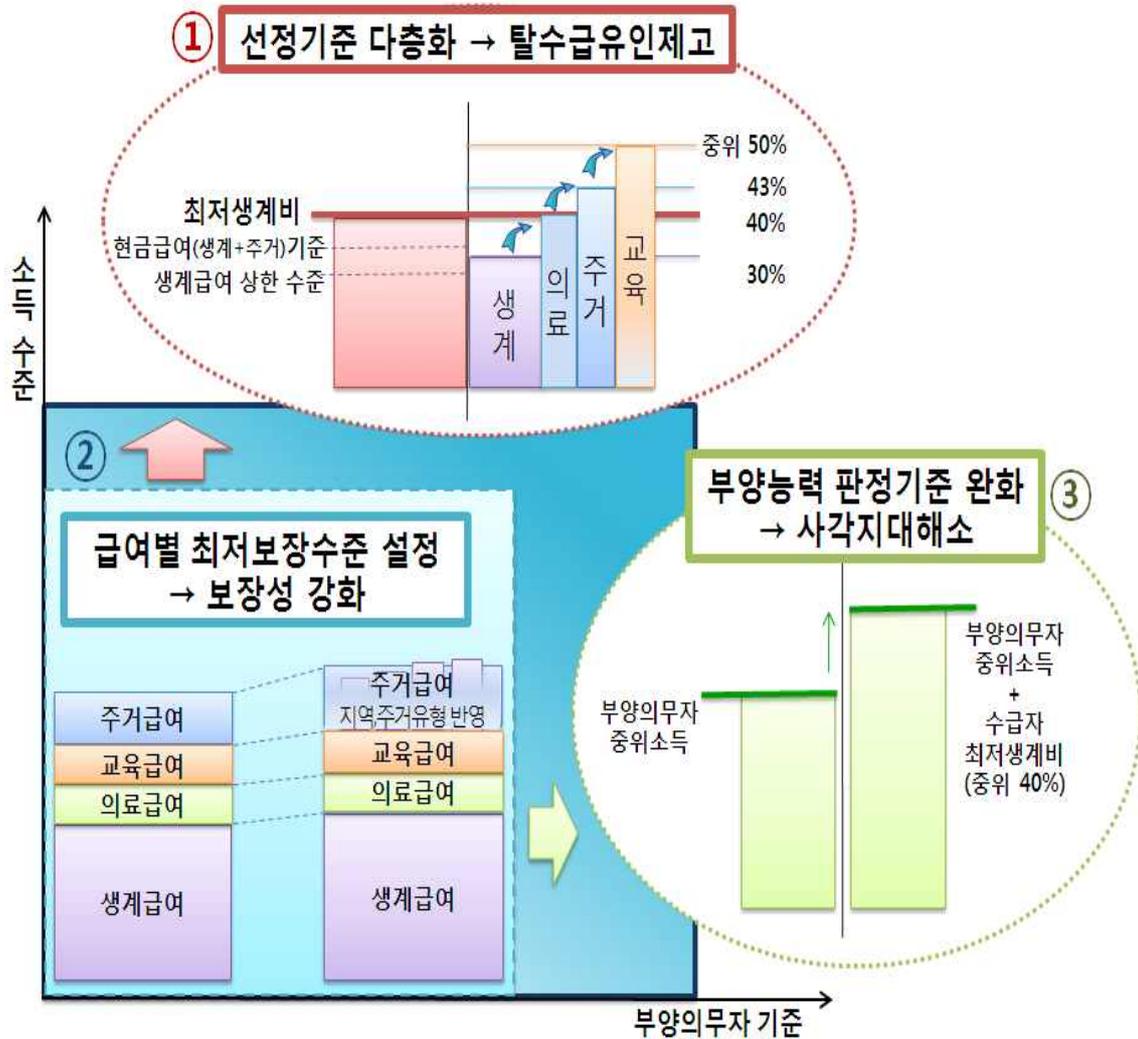
<표 14> 최저 교양 오락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중분류/ 품목	지역	계절/ 규격	내구 연수	단가 (원)	수량	중소도 시(원)	필수품 선정원칙	단가 설정기준	내구연수, 수량 설정기준
교양오락						27,117			
서적 및 인쇄물									
도서(성인)	전국	단행본	1년	9,823	1권	819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 자물가조사	국민독서 실태조사
도서(아동)	전국	단행본	1년	6,204	4권	2,068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 자물가조사	국민독서 실태조사
교양오락용품기구									
텔레비전	전국	29인치 (일반형)	10년	260,000	1개	2,167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카세트 라디오	전국	CD겸용	10년	70,000	1개	583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비디오	전국	VTR 4헤드	10년	130,000	1개	1,083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카메라	전국	자동카메라 (일반형)	10년	40,000	1개	333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컴퓨터	전국	중저가(보급형) /모니터 포함	6년	551,000	1개	7,653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프린터	전국	잉크젯 중저가(보급형)	10년	60,000	1개	500	전자제품 소비형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프린터 잉크	전국	재생/호환잉크 (리필형)	1년	7,000	1개	583	전자제품 소비형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필름	전국	24매	1년	2,500	2통	417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완구	전국	초등학생용 장 난감 1인/2개	1년	4,000	4개	1,333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CD	전국	음악용	1년	12,000	1개	1,000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교양오락서비스									
영화관람	전국	성인(2인/1회)	1년	8,169	2명	1,362	문화관광부	통계청 소비 자물가조사	실태조사
	전국	아동(2인/1회)	1년	7,501	2명	1,250	문화관광부	시장조사	실태조사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전국	가정용 TV	1월	2,500	1회	2,500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시장조사	방송법
여행 및 문화시설 관람	전국	고궁 및 박물관 (성인2,아동2)	1년	9,000	2회	1,500	실태조사	시장조사	실태조사
사진촬영 및 현상	전국	증명사진 3×4cm	5년	10,533	1조	176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 자물가조사	실태조사
	전국	사진현상 (24매)	1년	7,073	2통	1,179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 자물가조사	실태조사
비디오 테 이프 대여	전국	신판	1년	1,834	4회	611	실태조사	통계청 소비 자물가조사	실태조사

7.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급여체계 개편의 내용

<그림 8>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계획



○ 개별 급여 체계 도입

- 현행 기초법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7개 급여를 패키지형태로 묶는 방식을 유지함. 이는 탈수급 유인을 떨어뜨리고, 탈수급 가구의 자립을 어렵게 해 비판받아 왔음.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해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한다는 점임.



<표 15> 2015년 최저생계비 및 최대 현금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최대현금급여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361

○ 중위소득의 도입

-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각 개별급여에 대한 상대빈곤선, 즉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기준을 만든다는 점임. 중위소득은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하고 각 급여의 기준선(중위소득 기준 00%)을 공표함.

<표 16> 2015년 (7월~12월) 적용 기준 중위소득(단위 : 명,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가구규모별 산출

○ 급여별 선정기준

- 개정 기초보장법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로 명시함. 주거급여의 경우 주거급여법상 선정기준 43%로 명시하고 있음.
- 교육급여의 경우 보장수준은 종전제도와 같으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됨.

<표 17>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15)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1회 일괄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원	1, 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29,500원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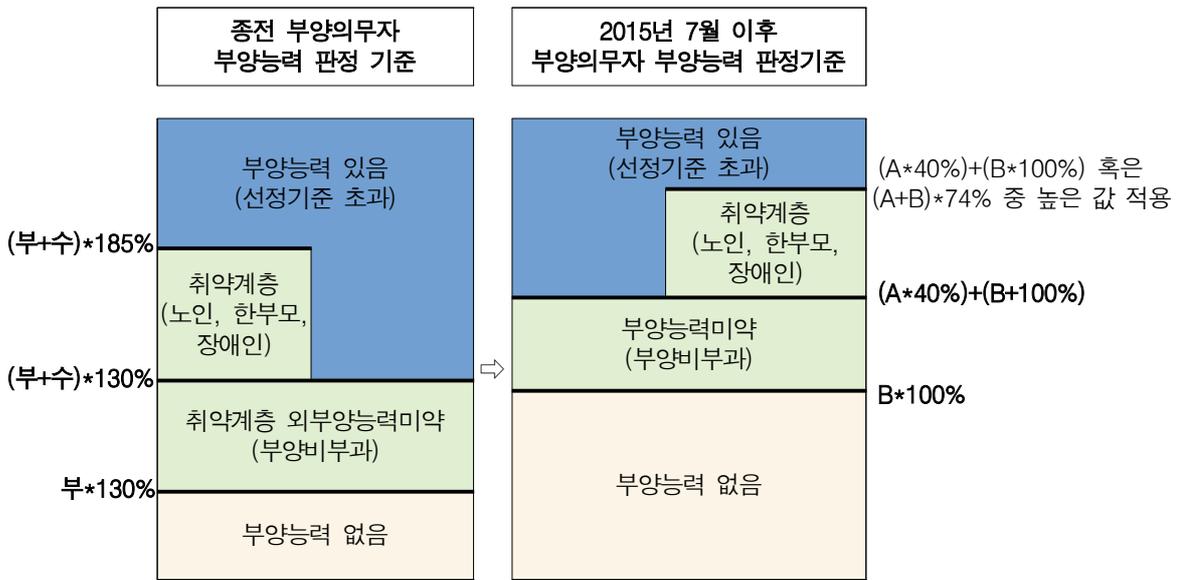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평가를 시행하지 않음.
- 생계급여 보장수준은 선정기준과 동일함.
- 의료급여 보장수준은 종전제도와 동일함.

<표 18>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28%)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의료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40%)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주거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43%)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교육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50%)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 부양능력 없음 기준은 부양의무자가구의 중위소득 이하, 부양능력 있음 기준은 [(부양의무자가구 중위소득+수급가구 중위소득)×75% 혹은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수급가구 중위소득 40%) 중 높은 선 채택]완화됨.
- 부양의무자 가구 내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 지출 등을 감안해 1인 추가 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적용함.(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총 3인가구라면 4인가구 중위소득을 활용해 부양능력 판정함)
-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됨.



*부: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

*A: 수급가구 중위소득

*수: 수급가구 최저생계비

*B: 부양의무자가구 중위소득

[그림 9]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표 19> 부양능력 판정기준표(판정소득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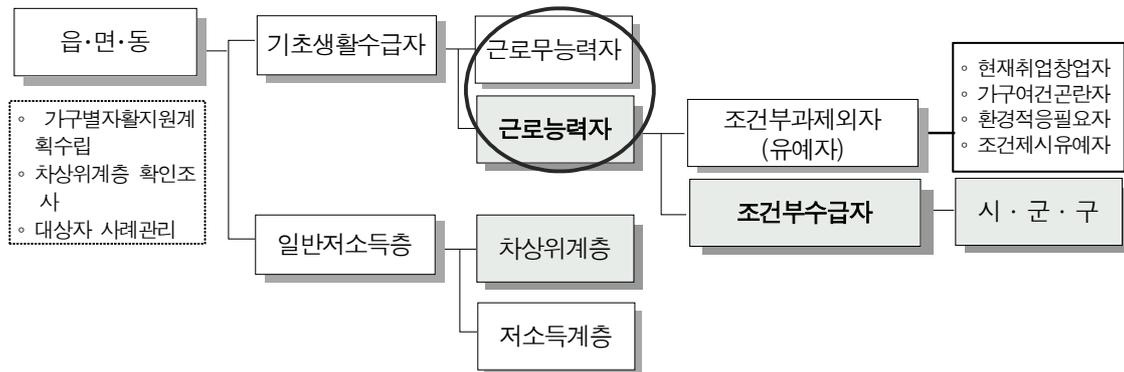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부양능력 판정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인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있음	2,187,272 (2,312,259)	3,285,131 (3,285,131)	4,066,299 (4,066,299)	4,847,468 (4,847,468)	5,628,637 (5,628,637)
2인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있음	2,626,415 (3,124,674)	3,724,274 (3,937,090)	4,505,442 (4,515,154)	5,286,611 (5,286,611)	6,067,780 (6,067,780)
3인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있음	2,938,883 (3,702,739)	4,036,742 (4,515,154)	4,817,910 (5,093,219)	5,599,079 (5,671,284)	6,380,248 (6,380,248)
4인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있음	3,251,350 (4,280,804)	4,349,209 (5,093,219)	5,130,377 (5,671,284)	5,911,546 (6,249,349)	6,692,715 (6,827,414)
5인	없음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있음	3,563,818 (4,858,869)	4,661,677 (4,661,677)	5,442,845 (6,249,349)	6,224,014 (6,827,414)	7,005,183 (7,405,479)

※ 부양능력판정 미약은 없음과 있음 금액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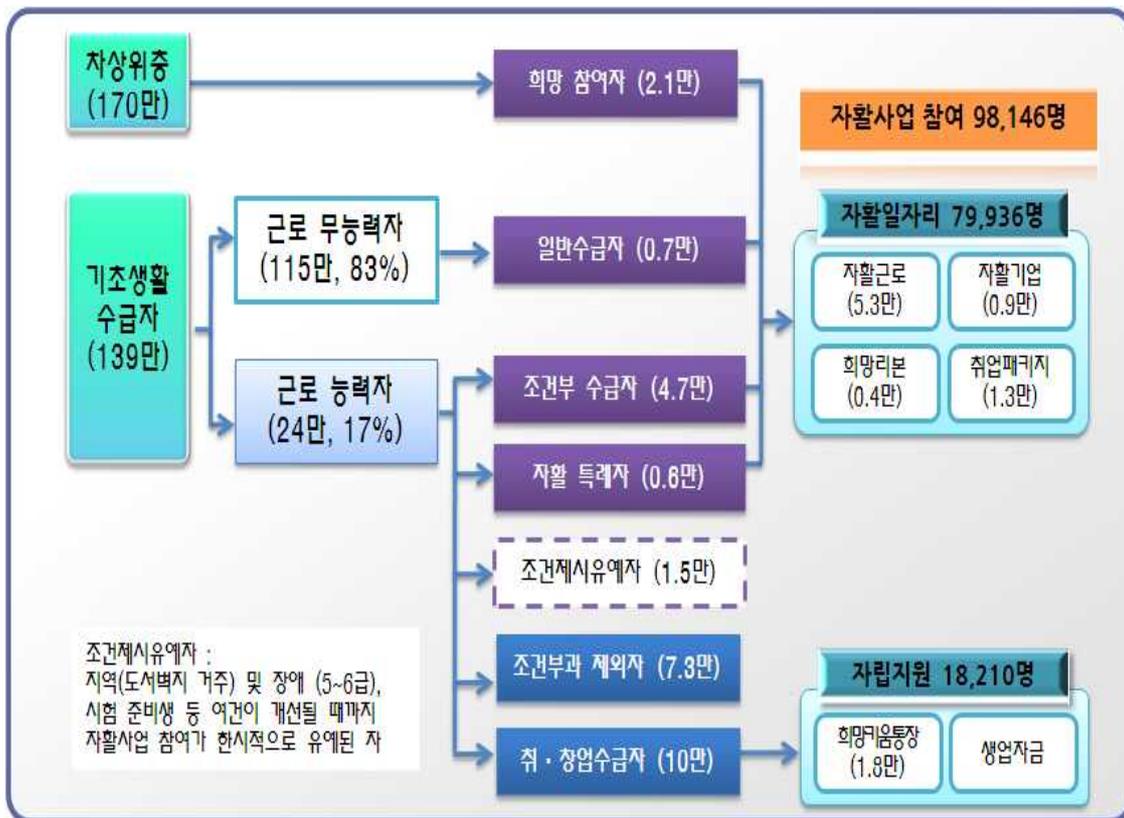
※ ()안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임

3) 근로능력판정

<그림 9> 근로능력판정 체계 및 판정과정



<그림 10>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12년말)



8. 개편되는 주거급여, 그리고 문제점

1) 주거급여의 변천과 현행 주거급여의 한계

○ 종전 기초법 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기초법 제7조 7항에 기초법상 급여로 명시,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됨.

제8조(임차료의 구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차료는 월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11조(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수선비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선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수선을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또는 자활기업에 우선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8.2> [전문개정 2012.2.14]

○ 개정된 기초법상 주거급여의 내용과 주거급여법상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음.

- <기초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7.1> 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주거급여법>에 명시되어 있음.
- <주거급여법> 제2조(정의)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 되어 있음.

<표 20> 주거급여의 변천 (단위: 원)

년도	급여 내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2년	최저생계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현금급여액	304,100	503,639	692,722	871,348	990,723	1,117,939
	최저주거비	67,010	110,979	152,644	192,005	218,310	246,343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9.4%					
	주거 급여	차가	28,000	28,000	40,000	40,000	53,000
자가		20,000	20,000	28,000	28,000	37,000	37,000
2003년	최저생계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현금급여액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최저주거비	69,020	114,308	157,224	197,766	224,860	253,733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9.4%					
	주거 급여	차가	32,000	32,000	41,000	41,000	54,000
자가		22,400	22,400	28,700	28,700	37,800	37,800
2004년	최저생계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현금급여액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최저주거비	71,436	118,309	162,726	204,687	232,730	262,614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9.4%					
	주거 급여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2005년	최저생계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현금급여액	343,498	571,978	776,833	972,256	1,114,789	1,264,419
	최저주거비	71,059	118,325	160,703	201,131	230,616	261,571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주거 급여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2006년	최저생계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현금급여액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최저주거비	73,913	123,837	166,067	206,808	239,111	272,532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주거 급여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2007년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현금급여액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최저주거비	77,025	129,767	171,901	213,012	248,329	284,413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주거 급여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2008년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현금급여액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25%					
	주거 급여	차가	79,859	135,268	177,053	218,314	256,607	295,292
자가		※ 차가의 주거급여는 기존 정액급여에서 가구별 0원 ~ 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로 지급, “자가가구 등 ⁸⁾ ”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2009년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주거 급여	차가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자가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25%					
2010년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주거 급여	차가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자가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25%					
2011년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주거 급여	차가	84,366	143,650	185,833	228,015	270,198	312,381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					
2012년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주거 급여	차가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					
2013년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7
	주거 급여	차가	90,636	154,372	199,645	244,963	290,281	335,599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1%)					
2014년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주거 급여	차가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398,157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82%)					
2015년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주거 급여	차가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398,157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0%)					

자료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각 년도.

☞ 현금급여 중 약 20%를 주거급여로 설정해두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8) “자가가구 등”의 범위 ①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다만 주택소유자가 수선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 등에서 제외가능) ③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④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⑤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하고 있다.

○ 현행 주거급여의 한계로 지적되는 바를 정리하자면,

- 가장 먼저 지적되는 주거급여의 문제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급여수준임.
 - 2013년 기준 수급가구 중 60% 이상이 보증부월세 혹은 무보증월세의 임차가구인데(공공임대 19.8%)임. 민간임대주택 1인가구만 하더라도 2014년 기준 10만원정도의 주거급여는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지불하는 월임대료수준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주거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임.
- 다음은 대상효율성의 한계임. 즉 주거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급여를 행하였는가’의 문제로서 급여자격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을 모든 급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적합한가의 문제였음.
 - 이에 소득대비 주거비지출비율 등의 기준이 도입되어야 하는 등 목표중심의 대상자 선정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이나 가구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개별욕구 실현에 대한 한계임.
 - 즉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면서 주거급여 기준선이 되는 최저주거비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4인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해 도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저주거비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주거비를 적용해 일괄하여 발표하였음.
 - 기초법은 급여수준을 정할 때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기초법 제4조 2항). 이러한 개별성 원칙에 충실하려면 가구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급여의 형태가 구현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는 가구원수만 고려할 뿐 지역(금지)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계였음.

2) 변경되는 주거급여의 내용

- 박근혜정부는 ‘맞춤형’복지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급여를 분리하고 급여별 기준을 설정해 시행한다고 하였음. 특히 아래의 사유를 들어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추진(임차가구 지역별, 가구별 지급/자가는 주택개량 위주)한다고 밝혔음.
-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이 낮고, 예산이 과

다해서), 전세자금융자 등은 전세에 한정되고 상환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은 지원되지 않으며,

- 현행 주거급여가 거주형태(임차, 자가)와 임대료수준에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고, 실질적인 주거비지원의 한계가 있고, 민간임차주택 저소득층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중위소득 50%이하 월세가구 64.5%, 소득하위 20% 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이 41.7%이 달함),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이러한 계획 하에 2013년 말 <주거급여법>을 통과시켰고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별도의 제도로 독립되었음.

- 2014년 7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⁹⁾ 2014년10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¹⁰⁾ 2014년 기존 수급가구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마쳤고, 2015년 7월부터 개별급여로 시행했음.

○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급여의 보장 내용은

- 최저주거기준¹¹⁾을 고려해 지역별,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¹²⁾)을 지원하며,
- 이 때 생계급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하였음.
- 현물급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 실시(노후도 조사에 따라 제외 가능)한다고 밝혔음.

9)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서대문구, 성북구가 시범지역이었다.

10) 주거급여의 본격시행에 대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주거급여의 시행은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이미 재정편성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하는 것은 기초법의 정부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로도 읽혔다. 개편 내용은 현행 중위소득 30%수준에서 43%로 크게 인상, 지급대상 확대 '73만 가구 → 93만 가구',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만원 → 11만원'으로 확대된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였다.

11) 최저주거기준: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 등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요건이다.

12) 보증금을 연 4%로 환산, 수급가구에 직접지급한다.

3) 검토할 부분,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

- 개별급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금급여에서 큰 쟁점 중 하나는 주거급여일 것임. 따라서 어느 선에서(자격기준), 어떻게 주거욕구를 충족할 것인가(급여 수준 및 지급방식)에 관한 문제가 관건이 될 것임. 다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려되는 몇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함.

(1) 선정기준은 적절한가? 소득기준+부양의무자기준

- 중위소득 40%는 2013년 최저생계비선 정도로 논의되다가, 지난 해 10월 최종적으로 43%로 결정해 발표(차상위 이하의 선임)됨¹³⁾
 - 중위소득 43%선은 기존 최저생계비 120%, 즉 차상위 소득선 보다 낮은 기준선임.

<표 21> 2015년 1월~6월 적용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차상위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최저생계비(원)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현금급여(원)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주거급여(원)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차상위(120%) (만원)	74	126	163	222	236

<표 22> 2015년 7월~12월 적용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생계급여28% (최저생계비80%선)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의료급여40% (현행동일)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주거급여43% (지역별기준임대료)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교육급여50% (현행동일)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출처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13) 개편안은 중위소득40%, 45%를 지원대상의 선으로 설정하고 중위소득 40%로 설정할 경우 146만5천가구, 중위소득 45%이하로 할 경우 169만5천가구로 추정하고 있음.

- 또하나의 기준, 대상자 선정기준에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기준이 종전 기초법을 준하고 있어 대상효율성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보일 것임. (<주거급여법> 제2조5항과 제5조)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7.1.] 제 5조

- 부양의무자기준을 넣을 경우, 임차가구는 82만5천가구로 추정. 그런데 주거급여 대상자가구는 76만가구이므로 대상자확대의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수준임.
-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할 것임. 반드시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해야할 것임. 현재 부양의무자조사로 인한 신청당시 장벽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 따라서 주거급여 역시 같은 상황에 놓일 것임.

※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합당한가?

- 앞서 살펴본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2010),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제도에 포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만명(60가구)임.
 - 기준 완화된 규칙 시행에는 한부모, 노인, 장애가구만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보장의 효과-사각지대 포괄효과-는 미미했음. 근본적으로 빈곤계층의 부양을 사적부문에 전가하는 부양의무자기준 문제가 있는 것임.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이 계속되었음.
 - 현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4인가구 422만원 2015년 상반기기준)으로 설정해두었음. 그러나 여전히 부양의무자가 수급가구에 대한 부양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에 대한 입증은, 여전히 수급(권)자의 몫이 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11.9.8.]

▶이혼한 한부모가정의 전배우자가 부양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장애인시설 등에서 퇴소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혼한 한부모가정의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지원이 없거나 지원받은 양육비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배우자의 부양의무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에 대한 입증 ① 기본자료 : 공무원의 사실조사복명서, 수급(권)자는 소명서와 지출실태조사표, 1년간 통장 입출금내역제출, 소명서가 용이하지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은 이웃주민이나 통반장이 확인서로 대체, 시설수급권자는 시설장의 확인서로 대체, ② 추가자료 :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사유서, 수급(권)자 최근 6개월간 유무선 전화기 통화내역서

○ (간주)부양비 산정의 문제

-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며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함.(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이거나 친정부모 가구의 경우는 15% 부과). 부양비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 제도 설계상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간주 부양비라고 불리고 있음. 실제 받는 부양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됨.

○ 구상권 청구의 한계

- 구상권(求償權) :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대다수의 수급(권)자는 구상권을 청구하려 하지 않음.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가족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나...”

(2) 급여수준은 적정한가? 자기부담금?

-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의 경우 급지별로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종전 주거급여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지역특성 미반영 부분을 일정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개정된 주거급여의 수준이 지역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문제임. 색이 칠해진 부분은 기존 주거급여보다 낮아지는 가구임.

<표 23>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종전 주거급여의 비교 (단위 : 원)

구분	1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 세종)	4 (그 외 지역)	종전 주거급여
1인가구	190,000	170,000	140,000	130,000	107,532
2인가구	220,000	190,000	150,000	140,000	183,094
3인가구	260,000	230,000	180,000	170,000	236,860
4인가구	300,000	270,000	210,000	190,000	290,626
5인가구	310,000	280,000	220,000	200,000	344,391
6인가구	360,000	330,000	250,000	230,000	398,157

○ 급여계산식 : 자기부담금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30%**
-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예1) 김00씨는 2인 여성한부모 가구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해 가구소득이 90만원 정도. 관악구에 보증금 300만원에 35만원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다. 이 가구는 얼마의 주거급여를 받게 될까?

- ① 가구소득은 주거급여 2인가구기준 114만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대상임.
- ② 다만, 월 소득 90만원은 2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인(중위소득 28%) 74만원을 넘기 때문에 자기부담분이 생긴.
- ③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30% 이므로, (90만원 - 74만원) × 30% = 4만8천원
- ④ 2인가구 최대 주거급여액 22만원에서 4.8만원을 제외한(자기부담분) 17만2천원이 이 가구의 주거급여가 됨.

* 자활참여자의 소득에 대한 공제가 30%일 경우(자활장려금), 계산은 달라짐. 즉 90만원의 소득 중 30%의 공제를 적용하면 63만원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 가구의 소득은 생계급여지급수준인 74만원 이하가 되므로 2인가구 주거급여 전액인 22만원을 지급받게 됨. 그렇게 되면 가구소득은 90만원+22만원=112만원 이 됨.

예2) 1인단독가구. 일반수급가구로 급여는 49만원정도. 현재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시원(무보증월세 25만원)에 거주하는 이 가구의 주거급여는 얼마일까?

- ① 가구소득은 주거급여 1인가구 중위소득 43%인 67만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 대상임. 주거급여를 제외한 소득이 39만원이므로 생계급여 대상자임.
- ② 1인가구 주거급여 최대액은 19만원이므로 이 가구의 주거급여는 19만원 이 됨.
- ③ 이 가구의 총 급여액은 생계급여 43만원+주거급여19만원=62만원임.

www.hb.go.kr (주거급여홈페이지) - 공공임대주택포털사이트로도 연결~

1600-0777 LH주거급여 콜센터

- 한편 실제임대료(수급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정부가 정한 지원임대료 상한선)보다 낮은 경우 급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의 경우 임대료지원액수가 감소(실질 임대료가 낮아서)해 총지원받는 급여가 감소될 우려가 있음. 이 또한 낮은 생계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제도개편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가구임¹⁴⁾.
 - 실제로 개편안에서는 급여감소가구의 상당수는 공공임대거주 6.7만가구로 보고 있음. 뿐만 아니라 4급지에 위치한 가구의 경우에도 8만가구가 감소의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이행급여**를 편성해 개편 전의 총 현금급여(생계+주거)의 감소를 **보전한다고 함.**

14) 실제로 제도개편안의 소요예산추계를 보면, 중위소득 40%로 할 경우 1조 2,586억원 정도를 예측했으나 단서로, 수급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가구가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소요예산이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표 24> 수급가구 주거유형별 현황(2013년도)

【 주거유형별 현황 】

(단위: 가구, %)

구분	계	자가	무주택									
			임차					위탁				기타
			소계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영구 임대주택	소계	가정 위탁	보장기관 제공 거주자	그룹홈 거주자	
가구수	810,544	86,822	408,568	66,177	118,397	123,812	100,182	13,256	995	9,582	2,679	301,898
구성비	100	10.7	50.4	8.2	14.6	15.3	12.3	1.6	0.1	1.2	0.3	37.3

※ 기타: 부분무료임차(20.2%), 전체무료임차(6.9%), 움막비닐하우스(0.6%), 무허가주택(0.8%) 등

(3) 법규정 상 우려되는 지점(<주거급여법>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시행 2개월여를 경과하는 지금 주거복지 현장에서 포착되는 주거급여 시행 상 문제점은 통장 기재내역 상 혼선을 초래하는 급여 내용¹⁵⁾,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급여통지문 등을 통한 설명 부족 등이었음.

○ 홍0숙 (서울 강남구 △△주공 104동) -2인 가구 수급자. 본인(70세)은 3급 장애, 남편(74세)은 4급 장애 -보증금 240만원 / 월 임대료 4만7천원 -7월 수급비(7월 20일 지급) 생계급여 384,290원 / 주거급여 7,790원 기초연금 324,160원 / 장애수당 8만원 -임대료 고지서에 47,000원 주거급여 예정이라고 찍힘	○ 서0희 (서울 강남구 △△주공 113동) -1인 수급가구. -7월 수급비(7월 20일 지급) 생계급여 437,460원 -(7월 30일 지급) '사회복지과'라고 통장에 찍혀서 39,600원과 23,870원이 찍힘.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주거급여가 누구에게는 20일에 들어오고, 누구에게는 30일에 주는지 모르겠다고 문의함.
○ 유0복(서울 용산구 □□ 고시원) -1인수급자. -월 25만원을 내고 있음. -7월 주거급여 19만원 나옴.	○ 주0복(서울 용산구 □□ 고시원) -1인수급가구 -월 25만원 내고 있음. -7월 주거급여 114,000원 나옴.
위 두 사람은 같은 고시원 바로 옆 방에 살고 있다. 월세도 25만원으로 똑같이 내고 있다. 주0복님은 이미 수급자로 다른 고시원에 있을 때, 주거급여 심사를 마쳤으나 고시원을 중간에 옮기는 바람에 또다시 임대차계약서와 고시원 영수증을 제출했다. 주거급여가 달라서 동주민센터로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 조사중이니깐 기다려라"는 말만 들었다. 처음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니깐 바로 옆에 사는 사람과 금액이 다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이0철 (서울 은평구 전세임대) -1인 수급가구. -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 82,910원 -7월 수급비 내역	주거급여를 '보증부 월차임'이라고 통장에 기재되어 나온다. 수급 당사자는 이것이 주거급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왜 두 번 찍혀서 다르게 지급되는지도 모른다.

15)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분리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주거급여 중 보증금에 대한 임차급여와 월임대료에 대한 임차급여를 분리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함께 같은 이름으로 기재하는 등 같은 구 내에서도 다른 형식의 기재가 발견되어 수급당사자들의 혼선을 초래했음.

<p>생계급여 437,460 / 보증금 월차임 82,910 / 보증금 월차임 1,670 = 522,040원</p>	<p>하나는 월 임대료를 주거급여로 지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것이다.</p>																																																																																				
<p>○ 김00님(서울 성북구 00재개발임대) - 1인 수급가구(노인가구)</p> <table border="1"> <thead> <tr> <th>거래내용</th> <th>찾으신금액</th> <th>맡기신금액</th> <th>남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번호 011619-02-105698 정영례</td> <td></td> <td></td> <td>*206,489</td> </tr> <tr> <td>타 [redacted] 주거급여</td> <td></td> <td>*15,900</td> <td>*222,389우</td> </tr> <tr> <td>타 5월기초연금 [redacted]</td> <td></td> <td>*202,600</td> <td>*424,989우</td> </tr> <tr> <td>체 국민연금드림</td> <td></td> <td>*224,490</td> <td>*649,479센</td> </tr> <tr> <td>지급</td> <td>*500,000</td> <td></td> <td>*149,479송</td> </tr> <tr> <td>지급</td> <td>*100,000</td> <td></td> <td>*49,479송</td> </tr> <tr> <td>2015년 05월 면제건수: *2건 면제금액: *1,000원</td> <td></td> <td></td> <td></td> </tr> <tr> <td>산 (150308-150606)</td> <td></td> <td>*60</td> <td>*49,539센</td> </tr> <tr> <td>세전이자: 60 소득세: 0 주면세: 0</td> <td></td> <td></td> <td></td> </tr> <tr> <td>타 [redacted] 주거급여</td> <td></td> <td>*15,900</td> <td>*65,439우</td> </tr> <tr> <td>타 생계급여</td> <td></td> <td>*56,300</td> <td>*121,739우</td> </tr> <tr> <td>타 6월기초연금</td> <td></td> <td>*202,600</td> <td>*324,339우</td> </tr> <tr> <td>체 국민연금드림</td> <td></td> <td>*224,490</td> <td>*548,829센</td> </tr> <tr> <td>CD지급</td> <td>*500,000</td> <td></td> <td>*48,829송</td> </tr> <tr> <td>타 [redacted] 기초생계급</td> <td></td> <td>*10,370</td> <td>*59,199우</td> </tr> <tr> <td>타 [redacted] 기초주거급</td> <td></td> <td>*10,600</td> <td>*69,799우</td> </tr> <tr> <td>타 7월기초연금 [redacted]</td> <td></td> <td>*202,600</td> <td>*272,399우</td> </tr> <tr> <td>체 국민연금드림</td> <td></td> <td>*224,490</td> <td>*496,889센</td> </tr> <tr> <td>ATM입금</td> <td></td> <td>*10,000</td> <td>*506,889송</td> </tr> <tr> <td>CD지급</td> <td>*500,000</td> <td></td> <td>*6,889송</td> </tr> </tbody> </table>	거래내용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남은금액	번호 011619-02-105698 정영례			*206,489	타 [redacted] 주거급여		*15,900	*222,389우	타 5월기초연금 [redacted]		*202,600	*424,989우	체 국민연금드림		*224,490	*649,479센	지급	*500,000		*149,479송	지급	*100,000		*49,479송	2015년 05월 면제건수: *2건 면제금액: *1,000원				산 (150308-150606)		*60	*49,539센	세전이자: 60 소득세: 0 주면세: 0				타 [redacted] 주거급여		*15,900	*65,439우	타 생계급여		*56,300	*121,739우	타 6월기초연금		*202,600	*324,339우	체 국민연금드림		*224,490	*548,829센	CD지급	*500,000		*48,829송	타 [redacted] 기초생계급		*10,370	*59,199우	타 [redacted] 기초주거급		*10,600	*69,799우	타 7월기초연금 [redacted]		*202,600	*272,399우	체 국민연금드림		*224,490	*496,889센	ATM입금		*10,000	*506,889송	CD지급	*500,000		*6,889송	<p>SH에서 임대료를 직접 수령해간 사실을 모르고 지난달에 비해 수급비가 깎였는데 어찌된 건지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상담함.</p>
거래내용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남은금액																																																																																		
번호 011619-02-105698 정영례			*206,489																																																																																		
타 [redacted] 주거급여		*15,900	*222,389우																																																																																		
타 5월기초연금 [redacted]		*202,600	*424,989우																																																																																		
체 국민연금드림		*224,490	*649,479센																																																																																		
지급	*500,000		*149,479송																																																																																		
지급	*100,000		*49,479송																																																																																		
2015년 05월 면제건수: *2건 면제금액: *1,000원																																																																																					
산 (150308-150606)		*60	*49,539센																																																																																		
세전이자: 60 소득세: 0 주면세: 0																																																																																					
타 [redacted] 주거급여		*15,900	*65,439우																																																																																		
타 생계급여		*56,300	*121,739우																																																																																		
타 6월기초연금		*202,600	*324,339우																																																																																		
체 국민연금드림		*224,490	*548,829센																																																																																		
CD지급	*500,000		*48,829송																																																																																		
타 [redacted] 기초생계급		*10,370	*59,199우																																																																																		
타 [redacted] 기초주거급		*10,600	*69,799우																																																																																		
타 7월기초연금 [redacted]		*202,600	*272,399우																																																																																		
체 국민연금드림		*224,490	*496,889센																																																																																		
ATM입금		*10,000	*506,889송																																																																																		
CD지급	*500,000		*6,889송																																																																																		

① 수급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알권리는 어디에?

- <주거급여법> 제 7조 4항은 임차료의 지급대상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는 LH 혹은 SH등의 지방공기업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LH 혹은 SH 등은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고 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수급자의 상담이 있으며,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함.
- 이러한 지급방식은 국토부가 주거급여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현금급여가 아닌 바우처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임.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제3항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구규모, 「주택법」 제5조의2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왜 또 공공임대주택 수급자에게만 적용하는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른가?
- 이런 의문제기 때문인지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집주인의 신고’에 의해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집주인’의 신청에 의해 집주인이 임차급여를 직접 수령하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어두었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수급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조항이 없음. 게다가 적어도 왜 체납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조항 또한 없이 바로 지급중지를 명시하고 있음. 현행 주거급여 시행고시에는 당사자의 선택권, 자기결정권은 어디에도 없다고 할 수 있음.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0조(월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 ① 조사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을 통하여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 연체(이하 "월차임 연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임대인이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이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라 한다)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월차임 연체에 해당됨을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다. ③ 제1항의 월차임 연체는 3개월 이상 각 월의 연체액이 각 월의 월차임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①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이하 "공통서식"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중지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하며, 조사기관은 임대인에게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속하는 급여일부터 임차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며,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차급여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명의로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급여를 재개하여 급여를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 요컨대, 법상 수급자 명의의 계좌가 우선 명시되어 있으므로 LH 혹은 SH 등의 지정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대한, 혹은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수급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② 법이 목적하는 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보장?16)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0조와 제11조, 제13조와 14조에서는 각각 임차급여 3개월을 연체하면 수급자에 대해 급여중지를 통지하고, 재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월임대료를 모두 임대인에게 갚아야 한다고 명시됨.
-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다수의 빈곤가구는 의료비, 교육비 등이 과다지출될 경우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고 그 기간도 대부분 3개월을 넘는 게 다반사임. 해당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에는 비현실적 조항일 뿐임.
- 특히 주거보장을 하려한다면 무조건적인 급여중지 통보에 앞서, 반드시 수급 당사자의 체납상황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해야하고, 그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동반되어야 하며 중지예외조항도 마련해야 함17).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0조(월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 ① 조사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을 통하여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 연체(이하 "월차임 연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임대인이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이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라 한다)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월차임 연체에 해당됨을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다. ③ 제1항의 월차임 연체는 3개월 이상 각 월의 연체액이 각 월의 월차임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①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이하 "공통서식"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중지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하며, 조사기관은 임대인에게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속하는 급여일부터 임차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며,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차급여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월차임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2.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 해당하는 경우(수급자의 주거이동 등을 통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신고 또는 조사기관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14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중지의 재개) 제11조에 따라 월차임 연체로 급여가 중지되었으나 제13

16) <주거급여법> 제 1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7) 우리는 행복e음 전상망 구축기간동안 갑작스런 급여중지를 통보받고 자살을 감행한 수급당사자를 보아온 게 사실임. 따라서 진정한 주거보장을 위해서라면 무조건적인 급여중지가 아닌, 소명절차를 거치고 그에 대한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개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된 임차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국토부 주거급여 홈페이지 중

● 부정수급이란?

「주거급여법」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가 부정수급자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된 금액을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월차임의 직접 수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해당 임차료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유형

- 주거급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본인과 가족의 소득·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을 신고하는 경우
-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임차료 연체 유형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③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어디에?

- 제도개편 안에는 “실질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기준임대료 수준 이상의 주택으로 상향이동을 전망하면서, 대상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는 물론, 저소득임차가구의 주거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음.
- 허나 (기준)임차급여를 더 받기 위해 괜찮은(?) 주택으로 상향 이동할 가구가 얼마나 되며, 더군다나 ‘그러한 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특히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얼마나 그러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없음.
- 임대료보조제도가 제대로 도입이 되고 시행되려면 주택공급자가 우위를 점한 시장에서는 사실상 불가함. 즉 저렴한 거처를 찾아야하는 사람들(주거급여의 대상자 혹은 주거비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선택지가 한정된 경우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공공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임대료만

상승하게 할 공산이 크기 때문임.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빈곤한 사람들에게 발생하게 됨.

- 현재 (주거)복지 현장에서는 주거급여의 집행을 알게 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점차 올리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음. 따라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스톡 파악과 임대인에 대한 규제책이 동시에 계획되어야 함¹⁸⁾.

(4) 권리구제는 문제없는가?

- <주거급여법> 14조에는 급여신청의 각하와 급여의 중지¹⁹⁾에 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급여에 대한 권리구제는 별도의 명시 없이 기초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p>제14조(급여신청의 각하 및 급여의 중지) 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p> <p>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수급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2. 수급자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p>③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현행 기초법상 행정의 결정에 불복하는 수급권자 혹은 수급자는 두 번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한번은 시도에, 다른 한번은 복지복지부장관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는, 주거급여에 대한 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전달체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의신청은 시군구와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두고 있어 사실상 권리구제가 얼마나 신속히,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지 우려가 됨.
- ‘부처 간 업무협조’ 혹은 ‘주거급여보장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는 한 주거비가 체납되어 주거 퇴거위기에 놓인 수급(권)자의 주거보장을 신속히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18) 서구사회의 임대료보조제도의 도입과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일정부분 확보된 이후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는 시점에서 도입하게 됨(홈리스지원책의 경우 임대료보조와 동시에 임대료규제 및 적정수준의 주택품질확보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함)

(5) 전달체계 -조사기관- 에 대한 우려

- 지난 정부가 구축한 행정망의 보급은 업무정확도와 효율성을 증진한다고 하였지만, 실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관리업무의 증가와 갈때기 현상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담과 사례관리 인력조차 확보되지 못했음. 복잡성을 띄는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현장에 밀착한 사례발굴과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 그런데 개별급여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 역시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업무'만을 수행하는 인력을 편성(현재 LH에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LH 전국 총 49개 사업소 설치, 1,580명 투입(이중 정규직 전환 12% 기간제현장조사원 1073명, 업무보조직 310명)되었음.
 - 한편,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전담인력을 채용했으나, 실제 주거실태조사내용과 이후 조치를 보면, 가구체납현황, 체납사유 등에 대한 조사항목은 없었음. 게다가 조사원은 '홍보'라는 부가업무까지 지시받고 있는 상황이었음¹⁹⁾.
 - 조사의 목적은 '주거복지',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봄. 이를 위하여 제대로 된 조사,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업무'에 방점을 둔다면 실태조사 외에 욕구와 문제, 자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²⁰⁾.
- 사실상 위와 같은 행정고시(시행규칙) 조항은 현행 생계급여에 대폭 수정과 상승, 그리고 의료급여의 확대가 없이는 수급가구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들임.
- 주거복지센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주거비지원(특히 연체된 체납월세액)을 요하는 가구의 경우 대부분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교육비, 혹은 아동이나 노인, 환자를 포함할 경우 계절적 특성인 동절기 연료비의 지출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체납기간은 3개월을 훨씬 상회하는 사례가 다반사이기 때문임.
 - 요컨대 이러한 조항은 주거급여의 목적을 주거조건을 안정화하려는 의도인지, 소득보조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려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증거로도 파악됨.

19) "통장에서 월세 낼 돈이 사라졌어요!" 주거 복지 현장 : 짧은 이야기(프레시안, 2015.9.1)

20)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100만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될 경우 1인당 1천300가구 정도를 커버해야한다고 함. 미국의 주택바우처업무는 담당자1인당 연간300가구를 담당하고 있음. 안전행정부가 추산한 주거급여 소요 인력은 약 1,200명~1,300명으로 보고 있음.

[참고 1] 한 장으로 보는 복지서비스(참고자료 첨부)

○ 서울형 기초보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실시한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10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소득기준)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2)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합니다.

※ 선정제외

- 자동차 : 1)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2)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1천만원 초과자(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137,456	4,939,925	5,510,909	6,081,895	6,652,881	7,223,865	7,794,851
재산기준	5억원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은?

-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 * 다만,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 결과를 적용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8세미만, 65세이상, 희귀난치성 질환대상자 등입니다.

1) 생계급여

- 소득 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합니다.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단위 : 원)

가구 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33%이하		33%초과 66%이하		66%초과 100%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203,702	205,000	407,405	145,000	617,281	75,000
2인	346,845	355,000	693,691	235,000	1,051,048	115,000
3인	448,697	430,000	897,394	285,000	1,359,688	145,000
4인	550,548	530,000	1,101,097	350,000	1,668,329	175,000
5인	652,400	625,000	1,304,800	415,000	1,976,970	210,000
6인	754,251	725,000	1,508,502	480,000	2,285,610	240,000
7인	856,102	820,000	1,712,205	540,000	2,594,251	270,000

2)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해산급여

- 1인당 6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4)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상담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란?

- 2015년 6월 시작된 제도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에서 탈락한 가구 등을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제도를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은?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소득과 재산기준이 초과하는 경우나 위기가정사례로 명시된 상황이 아니어도 해당 지역과 가정의 실정을 잘 아는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 3인 이상 포함된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반드시 주민센터와 구청에 문의!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85% (중위소득 75%)	1,141,970	1,944,439	2,515,423	3,086,409	3,657,395	4,228,379

○ 재산기준 :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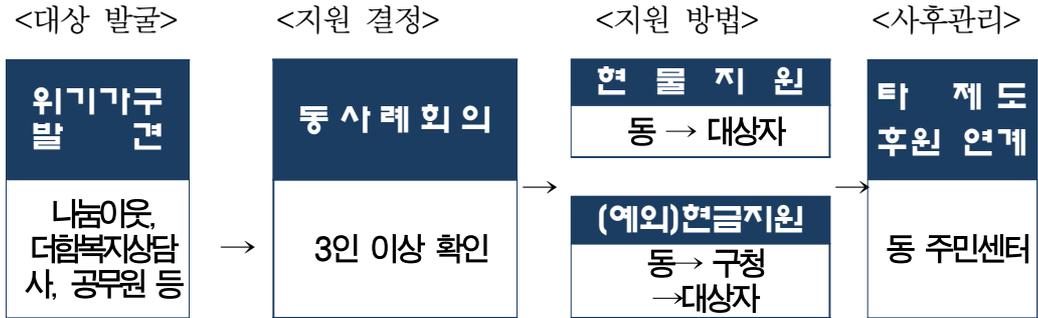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 소득자의 휴·폐업 / 실직 후 12개월 이내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6개월 이내 생계 곤란
 -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
 -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물품 지원
- 지원금액 :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현물지원(꼭 필요한 경우 현금 지원 가능)

□ 지원체계



□ 참고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과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의 비교

구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서울시)	긴급복지 지원 사업(국가)
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긴급복지지원법
대상	• 소득 : 최저생계비 185% 이하 • 재산 :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소득 : 최저생계비 185% 이하 • 재산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내용	• 현물 지원 원칙, 현금 지원 가능 - 생계, 주거, 의료 등 지원 · 1인 가구 : 30만원 이내 · 2인 이상 가구 : 50만원 이내	• 9개 항목, 중복 지원 가능 - 주급여 · 생계비 110만원(4인기준)/ 주거비 61만원(4인기준) · 의료비 300만원 이내 · 복지시설이용권 137만원(4인기준) - 부가급여 · 교육비 - 초등 20.9만원, 중등 33.3만원, 고등 40.8만원, 수업료, 입학금 · 연료비 90천원(11월~3월) · 해산비 60만원 · 장제비 75만원 · 전기요금 최대 50만원
횟수	• 1회 원칙	• 항목별 상이 : 1회~12회
재지원	• 동 사례관리회의 결정	• 2년 경과 후
예산	• 13억원(전액시비)	• 157억원(국비50%, 시비 25%, 구비25% 별도)
수행 기관	• 시 → 자치구 → 동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 서울형 주택바우처

구 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생계비 120%~150%가구 /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거주(전입신고) / 민간임대주택 -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계속지원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1인(43,000원), 2인(47,500원), 3인(52,000원), 4인(58,500원), 5인(65,000원), 6인 이상(72,500원) / 임대계약서,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상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관리 추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

[참고 2]

주거급여법

[시행 2015.8.11.] [법률 제13487호, 2015.8.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8.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같은 조 제1호의2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장기관) ①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제3항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구규모, 「주택법」 제5조의2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시행일 : 2015.12.23.] 제7조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주거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 주거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제10조(신청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선유지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사의 주기 등 확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조사의 의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기관, 의뢰의 내용·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장기관등”이라 한다)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수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 여부 및 주택등의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건물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등의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장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주거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③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주거급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이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

용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시범사업의 대상, 지급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시행일:2014.7.1.] 제16조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3.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 4. 제15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자료 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의 연계성,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5항(제15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2333호, 2014.1.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수선유지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의 실시는 제8조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예산“을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별도로 예산“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년 및 '16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5년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 '15년 및 '16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50%)	'15년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16년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주거급여 (중위43%)	'15년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16년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의료급여 (중위40%)	'15년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16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생계급여 (중위29%)	'15년*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6년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 '15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8%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1인	19.5	17.4	14.3	13.3
2인	22.5	19.5	15.4	14.3
3인	26.6	23.6	18.4	17.4
4인	30.7	27.6	21.5	19.5
5인	31.7	28.7	22.5	20.5
6인	36.9	33.8	25.6	23.6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전월세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